

인천광역시 남동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선	기 관 의 장
람	

제 362 호

2000 년 12 월 29 일 금 요일

차 례

조 례

-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4호(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) 3

고 시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0-34호(2톤미만어선등록제한고시폐지고시) --- 5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남동구 편집 : 문화홍보실

조 례

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00. 12. 29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

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594호

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

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632명”을 “633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651명”을 “652명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표1”과 “표2”를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의거 순증되는 보강정원 1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본다.

[별 지]

[표1]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표

구	분	정	원
정원의 총수		693	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	674	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	19	명

[표2]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

구	분	정	원
정원의 총수		673	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	654	명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	19	명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0-34호

2톤미만어선등록제한고시폐지고시

2톤미만 어선등록 제한고시(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1997-28호, 1997. 7. 7)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.

2000. 12. 29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2톤미만어선등록제한고시폐지고시

2톤미만 어선등록 제한고시(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1997-28호, 1997. 7. 7)는 이를 폐지합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